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265

제출년월일 : 1997. 11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우리도에서 설치하여 청주의료원장에게 위탁운영중인 정신질환자요양소를 새로이 제정되어 '96.12.30부터 시행중인 정신보건법에 맞게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함.

□ 주요골자

○ 설치조례명 변경

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	→	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

○ 명칭변경

정신질환자요양소	→	정신요양병원

□ 근거법령(따로붙임)

○ 정신보건법 제8조 제1항 및 부칙제5조

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명 "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"를 "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 설치조례"로 한다.

제1조중 "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(이하"요양소"라한다)"를 "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(이하"요양병원"이라한다)"으로 한다.

제2조 내지 제3조 및 제5조1항중 "요양소"를 "요양병원"으로 한다.

제2조중 "운천동 636-5번지"를 "사직동 554-6번지"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용료및진료비) 사용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수가에 준하여 징구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